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0일
-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참고로 강원, 전남, 전북, 경북, 인천 등 5개 시도 제정운영